##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두산은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제 530 조의 12 의 규정에 따라 2021 년 6 월 25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두산은 존속하기로 결의한 후,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두산은 2021 년 7 월 1 일 이사회 결의로써 상법 제 530 조의 12 및 제 526 조 제 3 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의 경과를 공고합니다.

## - 다 음 -

## 1. 분할의 내용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지게차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차량BG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며,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 및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한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함.
  - 분할되는 회사: 주식회사 두산
  - 분할신설회사 :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
- (2)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 (3) 본건의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주식회사 두산의 자본, 자본준비금, 발행주식총수, 정관 등의 변동은 없음

## 2. 분할의 진행 경과

구분	일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1년 3월 11일
분할계획서 작성일	2021년 3월 11일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2021년 4월 9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년 6월 25일
분할기일	2021년 7월 1일
보고(창립)총회 갈음 공고 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1년 7월 1일
분할등기 예정일	2021년 7월 1일

2021년 7월 1일

주식회사 두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대표이사 곽 상 철